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2.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2. 4.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이진환 의원 등 5명
- 제출일자: 2026. 1. 21.(수)
- 회부일자: 2026. 1. 22.(목)
- 검토기간: 2026. 1. 22.(목) ~ 1. 30.(금)

2. 개정이유

- 관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 거부 대상인 ‘영업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수정(안 제13조제3호)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라 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및 제15조(관리방법)에서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한 주차거부사유 중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를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판매 및 홍보 등 영리 목적의 행위”로 폭넓게 개정하고 영리행위에 따른 주차거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특별한 이견이 없음.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2024. 1. 9.>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24.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외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